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신규문 대비표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시설종류</th> <th colspan="2" style="width: 60%;">세부종류</th> <th rowspan="2" style="width: 25%;">관련법</th> </tr> <tr> <th style="width: 30%;">생활시설</th> <th style="width: 30%;">이용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td> </tr> </tbody> </table>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시설종류</th> <th colspan="2" style="width: 60%;">세부종류</th> <th rowspan="2" style="width: 25%;">관련법</th> </tr> <tr> <th style="width: 30%;">생활시설</th> <th style="width: 30%;">이용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u>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u>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td> </tr> </tbody> </table>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u>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u>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시설종류</th> <th colspan="2" style="width: 60%;">세부종류</th> <th rowspan="2" style="width: 25%;">관련법</th> </tr> <tr> <th style="width: 30%;">생활시설</th> <th style="width: 30%;">이용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신보건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u>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시설</u>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u> </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신보건법」</td> </tr> </tbody> </table>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u>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시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u> 	「정신보건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시설종류</th> <th colspan="2" style="width: 60%;">세부종류</th> <th rowspan="2" style="width: 25%;">관련법</th> </tr> <tr> <th style="width: 30%;">생활시설</th> <th style="width: 30%;">이용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신보건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u>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u>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u> </td> <td style="text-align: center;">「<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td> </tr> </tbody> </table>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u>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u>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u>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시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u> 	「정신보건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u>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u>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시설종류</th> <th colspan="2" style="width: 60%;">세부종류</th> <th rowspan="2" style="width: 25%;">관련법</th> </tr> <tr> <th style="width: 30%;">생활시설</th> <th style="width: 30%;">이용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매매피해지원 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u>외국인여성지원 시설</u> ○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자활지원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td> </tr> </tbody> </table>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u>외국인여성지원 시설</u> ○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시설종류</th> <th colspan="2" style="width: 60%;">세부종류</th> <th rowspan="2" style="width: 25%;">관련법</th> </tr> <tr> <th style="width: 30%;">생활시설</th> <th style="width: 30%;">이용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매매피해지원 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u>외국인지원시설</u> ○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자활지원센터 ○ <u>성매매피해상담소</u></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td> </tr> </tbody> </table>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u>외국인지원시설</u> ○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u>성매매피해상담소</u>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여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포함 요청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u>외국인여성지원 시설</u> ○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u>외국인지원시설</u> ○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u>성매매피해상담소</u>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7조제3항 각 호’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로 변경(‘18.4.25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13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신설>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반영
14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신설>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할 것(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반영
1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위탁계약 체결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체결하지 말 것 ●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 포함할 것 ①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 해지됨 ② 수탁자가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 해지됨(단, 수탁 받은 법인이 ----- 예외로 한다) <p><신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위탁계약 체결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체결하지 말 것 ●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 포함할 것 ①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 해지됨 ② 수탁자가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 해지됨(단, 수탁 받은 법인이 ----- 예외로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중에 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div>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 요청사항 반영
16	■ 시설장의 경우 ● 법 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시설장의 경우 ● 법 제35조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17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14923호(2018.4.25. 시행)에 따라 “제7조제3항 각 호”가 “제19조제1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로 변경 * 제19조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8.10.25. 시행 ○ 법 제1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17	<p>■ 종사자의 경우 <신설></p>	<p>■ 종사자의 경우 ☞ 법률 제14923호(2018.4.25. 시행)에 따라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가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로 변경</p>	<p>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p>
20	<p>●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 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u>참여시키도록 시설장에게 권고</u></p>	<p>●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 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u>참여시킬 것</u></p>	<p>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법 규정에 따라 내용 명확화</p>
20	<p>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p>	<p>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제6호 참조)</p>	<p>공익단체에 대한 개념 명확화</p>
20	<p>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신설></p>	<p>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석, 17-0433)</p>	<p>법제처 해석 사항 안내</p>
22	<p>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신설></p>	<p>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 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p>	<p>회의록 제출 시기 구체화</p>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31	3)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 사용 ● (대상사업) 사회복지시설이 민간보조사업자인 국고보조사업 ※ 국비매칭없이 지방비로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사용대상 아님 ● (적용시기) e나라도움 1차개통('17.1월) 1년 후인 '18년부터 사용 ※ 사업별로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지침 혹은 담당 부서를 통해 추가확인 필요	3)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 사용 ● (대상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국비 매칭없이 지방비로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사용대상 아님 ● (사용시기) 2018년부터 ● (사용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시스템 간 정보연계로 추가업무 최소화) ● (주요변경사항) <table border="1" data-bbox="1059 544 1883 703"> <thead> <tr> <th colspan="2">집행 방식</th> <th>변경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보조금 전용카드</td> <td>변경 없음</td> </tr> <tr> <td rowspan="2">전용카드 외</td> <td>개인(종사자) 대상 지출</td> <td>개인별 집행내역 등록</td> </tr> <tr> <td>사업자 대상 지출</td> <td>전자세금계산서 연계</td> </tr> </tbody> </table>	집행 방식		변경 내용	보조금 전용카드		변경 없음	전용카드 외	개인(종사자) 대상 지출	개인별 집행내역 등록	사업자 대상 지출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e나라도움 사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집행 방식		변경 내용												
보조금 전용카드		변경 없음												
전용카드 외	개인(종사자) 대상 지출	개인별 집행내역 등록												
	사업자 대상 지출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31	4)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삭제>	불필요한 내용 삭제											
33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신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다. 기타 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시 결혼·임신·출산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할 경우, 해당 질문이 지원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차별행위가 됨(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 618, 12진정0944300 등 참조)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시키거나(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889400), - 종교행사에 참석에 강요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도 장애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종사자 채용·노무관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34	<p>-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174 292 1014 568"> <tr> <td data-bbox="174 292 297 339">국민연금</td> <td data-bbox="297 292 779 339">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d data-bbox="779 292 1014 568" rowspan="4">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 </tr> <tr> <td data-bbox="174 339 297 387">건강보험</td> <td data-bbox="297 339 779 387">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 </tr> <tr> <td data-bbox="174 387 297 483">고용보험</td> <td data-bbox="297 387 779 483">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td> </tr> <tr> <td data-bbox="174 483 297 568">산재보험</td> <td data-bbox="297 483 779 568">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td> </tr> </table>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p>● (4대 보험 가입) 관련 법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p>	<p>관련 법령 내용을 동지침에 모두 열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바 업무담당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적용하도록 내용 수정</p>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39	<p>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참조)</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p> <p><신설></p>	<p>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참조)</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p>	<p>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p>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40	<p>2. 개별기준</p> <p><신설></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1055 288 1904 831"> <thead> <tr> <th rowspan="2">위 반 행 위</th> <th rowspan="2">근거 법령</th> <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위반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p>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p> </td> <td> <p>법 제40조 제1항 제4호</p> </td> <td> <p>개선 명령</p> </td> <td> <p>시설장 교체</p> </td> <td> <p>시설장 교체</p> </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p>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40조 제1항 제4호</p>	<p>개선 명령</p>	<p>시설장 교체</p>	<p>시설장 교체</p>	<p>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p>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p>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40조 제1항 제4호</p>	<p>개선 명령</p>	<p>시설장 교체</p>	<p>시설장 교체</p>												
42	<p>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 제5항)</p> <p>●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p> <p><신설></p>	<p>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 제5항)</p> <p>●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p> <p>※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인 2018.4.25.부터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p>	<p>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반영</p>													
46	<p>※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인증·평가하는 복지시설은 해당 지침에 따름</p>	<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름</p>	<p>시설 평가의 법적 근거 명시</p>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46	가. 추진경위 <제7기(2017~2019) 사회복지시설 평가> <table border="1" data-bbox="165 320 1016 515"> <thead> <tr> <th>평가년도</th> <th>평가대상시설</th> </tr> </thead> <tbody> <tr> <td>2017</td> <td>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요양, 재활, 자활)시설</td> </tr> <tr> <td>2018</td> <td>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td> </tr> <tr> <td>2019</td> <td>아동복지시설(거주), 장애인거주시설(거주, 단기, 그룹홈), 장애인직업재활시설</td> </tr> </tbody> </table>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7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요양, 재활, 자활)시설	2018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복지시설(거주), 장애인거주시설(거주, 단기, 그룹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 추진경위 <제7기(2017~2019) 사회복지시설 평가> <table border="1" data-bbox="1046 320 1897 515"> <thead> <tr> <th>평가년도</th> <th>평가대상시설</th> </tr> </thead> <tbody> <tr> <td>2017</td> <td>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td> </tr> <tr> <td>2018</td> <td>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td> </tr> <tr> <td>2019</td> <td>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td> </tr> </tbody> </table>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7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2018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법 개정 등에 따른 시설유형 수정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7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요양, 재활, 자활)시설																		
2018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복지시설(거주), 장애인거주시설(거주, 단기, 그룹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7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2018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7	나. 시설평가 실시 ○ 2017년도 평가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자활시설 신규포함),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2014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보조금 지원 유무와 상관 없음)	나. 시설평가 실시 ○ 2018년도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2015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보조금 지원 유무와 상관 없음)	연도 및 평가대상시설 수정																
47	○ 평가대상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평가대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연도 수정																
47	○ 평가항목 - 6개영역(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관계) 5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항목 중 일부(행정처분 사항 등)는 시설 소관 지자체를 통해 반영	○ 평가항목 - 6개 영역(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이용자의 권리, F.지역사회관계) 5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 - 시설 소관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접수반영	내용 명확화																
47	<신설>	○ 추진주체별 역할 <table border="1" data-bbox="1055 1107 1904 1426"> <thead> <tr> <th>주체</th> <th>보건복지부(중앙)</th> <th>시·도(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역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평가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 평가지표 확정 ● 평가결과 분석·공개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시설 확인 및 시설통보 ● 현장평가위원 추천(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 현장평가 예산 확보·지급(평가위원 교육 및 평가수당, 출장비) ● 행정처분사항 확인 등 평가업무 관련 시·도 해당사항 추진 ※ 복지부와 협의·연계 </td> </tr> </tbody> </table> ※ 시설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평가역할 확대예정	주체	보건복지부(중앙)	시·도(지방)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평가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 평가지표 확정 ● 평가결과 분석·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시설 확인 및 시설통보 ● 현장평가위원 추천(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 현장평가 예산 확보·지급(평가위원 교육 및 평가수당, 출장비) ● 행정처분사항 확인 등 평가업무 관련 시·도 해당사항 추진 ※ 복지부와 협의·연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을 위해 주체 별 역할 정의 및 향후 추진방향 안내										
주체	보건복지부(중앙)	시·도(지방)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평가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 평가지표 확정 ● 평가결과 분석·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시설 확인 및 시설통보 ● 현장평가위원 추천(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 현장평가 예산 확보·지급(평가위원 교육 및 평가수당, 출장비) ● 행정처분사항 확인 등 평가업무 관련 시·도 해당사항 추진 ※ 복지부와 협의·연계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48	<p>다. 평가결과 사후관리</p> <p>○ 제외사유</p> <p>- 후원금품·보조금 횡령, 인권유린, 성폭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사실이 있는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6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p> <p>(시설유형별 개별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사항 확인)</p>	<p>다. 평가결과 사후관리</p> <p>○ 인센티브 제외사유</p> <p>-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확인 된 시설</p>	내용 명확화																													
48	<p>○ 지원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168 560 1030 847"> <tr> <td data-bbox="168 560 293 655">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td> <td data-bbox="293 560 1030 6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우수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td> </tr> <tr> <td data-bbox="168 655 293 847">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td> <td data-bbox="293 655 1030 8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평가회 지원 <p>* 컨설팅 주체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 관계자 등</p> </td> </tr> </table> <p>※ 평가 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및 컨설팅 내용 및 예산 범위는 평가년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p>	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우수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평가회 지원 <p>* 컨설팅 주체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 관계자 등</p>	<p>○ 지원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1064 560 1908 959"> <tr> <td data-bbox="1064 560 1189 655" rowspan="2">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td> <td colspan="2" data-bbox="1189 560 1908 608">● 평가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td> </tr> <tr> <td data-bbox="1189 608 1547 655">우수시설</td> <td data-bbox="1547 608 1908 655">개선시설</td> </tr> <tr> <td data-bbox="1064 655 1189 687">지원대상</td> <td data-bbox="1189 655 1547 687">총점기준 상위 10% 내외</td> <td data-bbox="1547 655 1908 687">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3%내외</td> </tr> <tr> <td data-bbox="1064 687 1189 719">지원내용</td> <td data-bbox="1189 687 1547 719">시설당 7,000천원</td> <td data-bbox="1547 687 1908 719">시설당 3,500천원</td> </tr> <tr> <td colspan="3" data-bbox="1064 719 1908 751">*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시설은 유형 규모를 고려하여 금액 차등적용</td> </tr> <tr> <td colspan="3" data-bbox="1064 751 1908 799">● 평가우수시설에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사회복지의 날' 포상 추천</td> </tr> <tr> <td data-bbox="1064 799 1189 959" rowspan="2">평가미흡시설</td> <td colspan="2" data-bbox="1189 799 1908 847">●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td> </tr> <tr> <td colspan="2" data-bbox="1189 847 1908 895">●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td> </tr> <tr> <td colspan="3" data-bbox="1064 895 1908 943">* 컨설팅 참여인력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등</td> </tr> </table>	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 평가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우수시설	개선시설	지원대상	총점기준 상위 10% 내외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3%내외	지원내용	시설당 7,000천원	시설당 3,500천원	*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시설은 유형 규모를 고려하여 금액 차등적용			● 평가우수시설에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사회복지의 날' 포상 추천			평가미흡시설	●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 컨설팅 참여인력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등			시설의 운영개선 등 동기 부여를 위해 평가 우수(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상세내역 추가
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우수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평가회 지원 <p>* 컨설팅 주체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 관계자 등</p>																															
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 평가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우수시설	개선시설																														
지원대상	총점기준 상위 10% 내외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3%내외																														
지원내용	시설당 7,000천원	시설당 3,500천원																														
*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시설은 유형 규모를 고려하여 금액 차등적용																																
● 평가우수시설에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사회복지의 날' 포상 추천																																
평가미흡시설	●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 컨설팅 참여인력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등																																
48	<p>○ 추진일정</p> <p>- 지원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4~10월, 4회)</p>	<p>○ 추진일정</p> <p>- 컨설팅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지원(4~10월, 4회)</p>	용어 수정																													
48	<p>○ 시·도 및 시·군·구 협조 사항</p> <p>-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 시 참여</p> <p>-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시설환경개선, 인력 등)</p>	<p>○ 시·도 및 시·군·구 협조 사항</p> <p>-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 시 참여</p> <p>- 평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기능보강 등 시설환경개선, 인력보강, 운영주체 변경 등)</p> <p>- 연속 미흡시설의 경우 복지부와 함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p>	연속 미흡시설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시·도 및 시·군·구의 관리 강화 강조																													
49	라. 행정사항	<삭제>	불필요한 내용 삭제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52	<p>●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요원 복무분야 및 업무</p> <table border="1" data-bbox="181 293 927 754"> <thead> <tr> <th>구 분</th> <th>복무분야</th> <th>주요업무</th> </tr> </thead> <tbody> <tr> <td>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td> <td>사회복지시설</td> <td>노인·장애인 등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td> </tr> <tr> <td>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td> <td>지방자치단체</td> <td>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td> </tr> <tr> <td>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td> <td>국립검역소, 보건(지)소</td> <td>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 사업 활동 등 지원</td> </tr> <tr> <td>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 구호업무지원</td> <td>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td> <td>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복무분야	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등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 사업 활동 등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 구호업무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	<p>●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요원 복무분야 및 업무</p> <table border="1" data-bbox="1061 293 1854 738"> <thead> <tr> <th>복무분야</th> <th>복무기관</th> <th>주요업무</th> </tr> </thead> <tbody> <tr> <td>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td> <td>사회복지시설</td> <td>노인·장애인 등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td> </tr> <tr> <td>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지원</td> <td>지방자치단체</td> <td>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td> </tr> <tr> <td>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td> <td>국립검역소, 보건(지)소</td> <td>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 등 지원</td> </tr> <tr> <td>환자 구호업무 지원</td> <td>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td> <td>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td> </tr> <tr> <td>일반행정</td> <td>행정기관, 공공단체 등</td> <td>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td> </tr> </tbody> </table>	복무분야	복무기관	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등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 등 지원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	일반행정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p>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상 사회복지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반영</p>
구 분	복무분야	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등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 사업 활동 등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 구호업무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																																		
복무분야	복무기관	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등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무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 등 지원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																																		
일반행정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53	<p>• 사회복지요원 교육시스템 : 기초군사훈련(4주/국방부) → <u>소양교육</u>(1주/병무청) → 직무교육(기본직무교육 2주, 심화직무교육 3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순으로 실시</p>	<p>• 사회복지요원 교육시스템 : 기초군사훈련(4주/국방부) → <u>복무기본교육</u>(1주/병무청) → 직무교육(기본직무교육 2주, 심화직무교육 3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순으로 실시</p>	<p>병역법 상 명칭 변경 사항 반영</p>																																	
54	<p>● 사회복지교육센터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181 983 927 1062"> <thead> <tr> <th>구 분</th> <th>교육 관할지역</th> <th>소재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서울사회복지교육센터</td> <td>서울, 경기북부, 강원</td> <td>서울 관악구</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지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관악구		<p>● 사회복지교육센터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1061 983 1854 1062"> <thead> <tr> <th>구 분</th> <th>교육 관할지역</th> <th>소재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서울사회복지교육센터</td> <td>서울, 경기북부, 강원</td> <td>서울 중구</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지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중구		<p>서울사회복지교육센터 소재지 이전</p>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지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관악구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사회복지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중구																																		
54	<p>- 기본직무교육 : 2주, 67시간</p> <table border="1" data-bbox="181 1142 1003 1302"> <thead> <tr> <th>구 분</th> <th>사회복지과정</th> <th>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th> <th>보건의료과정</th> </tr> </thead> <tbody> <tr> <td>주요교과목</td> <td>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4개 과목</td> <td>바우처사업 이해 등 14개 과목</td> <td>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5개 과목</td> </tr> </tbody> </table>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4개 과목	바우처사업 이해 등 14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5개 과목	<p>- 기본직무교육 : 2주, 67시간</p> <table border="1" data-bbox="1061 1142 1883 1302"> <thead> <tr> <th>구 분</th> <th>사회복지과정</th> <th>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th> <th>보건의료과정</th> </tr> </thead> <tbody> <tr> <td>주요교과목</td> <td>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td> <td>바우처사업 이해 등 15개 과목</td> <td>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6개 과목</td> </tr> </tbody> </table>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	바우처사업 이해 등 15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6개 과목	<p>교과목 개편에 따른 교과목 수 변경 반영</p>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4개 과목	바우처사업 이해 등 14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5개 과목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주요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	바우처사업 이해 등 15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의 이해 등 16개 과목																																	
55	<p>● '17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무교육 <u>11,769명</u> - 심화직무교육 <u>6,000명</u> 	<p>● '18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무교육 <u>12,180명</u> - 심화직무교육 <u>7,000명</u> 	<p>'18년 교육계획인원으로 변경</p>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59	<p>사회복무요원 <u>신상이동통보</u> 등(「병역법」 제32조 등)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u>신상이동 통보</u>)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u>신상이동 통보</u>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벌금에 처한다.</p> <p>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u>신상이동 통보</u>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p>	<p>사회복무요원 <u>신상변동통보</u> 등(「병역법」 제32조 등)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u>신상변동 통보</u>)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u>신상변동 통보</u>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벌금에 처한다.</p> <p>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u>신상변동 통보</u>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p>	병역법 개정 사항 반영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 '16년 : 시설평가,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 시설 통합관리 기 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 '17년 : 시설평가, 안전점검, 사회복지법인 시설 통합관리 기 능개선 	연도 변경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고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후원금 관리 - 시설의 후원금(품) 처리내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스 마트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시설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고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후원금 관리 - 후원약속사항(기탁서) 등록, 수입사용 내역 관리 및 공시 	시설정보시스템 기능 변경 사항 반영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단체) 정보연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단체) 정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복지시설 관리(시설생계급여, 보조사업, 종사자 등)를 위한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e나라도움 연계 - 실종자의 조기발견 및 복귀를 위한 무연고 입소자에 대한 경찰청 연계 	정보연계 내용 추가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보고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지역 자활</td> <td style="width: 20%;">자활사업단보고</td> <td style="width: 60%;">신규 사업단 정보 보고</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수시</td> </tr> <tr> <td></td> <td>자활사업단운영보고</td> <td>월별 자활사업운영 및 자활참여이행 정보 보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td> </tr> <tr> <td></td> <td>집수리진행상태보고</td> <td>집수리 진행상태 보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시</td> </tr> </table>	지역 자활	자활사업단보고	신규 사업단 정보 보고	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월별 자활사업운영 및 자활참여이행 정보 보고	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집수리 진행상태 보고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보고 서식 <삭제> 	자활정보시스템으로의 기능 이관에 따라 주요 보고 서식에서 지역 자활 표 삭제
지역 자활	자활사업단보고	신규 사업단 정보 보고	수시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월별 자활사업운영 및 자활참여이행 정보 보고	월												
	집수리진행상태보고	집수리 진행상태 보고	수시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81	1)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 <u>입소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u>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 보고를 수행함	1)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 <u>입소자의 입퇴소일자 등이</u>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내용 명확화																																			
82	2) 종사자 보고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 : 입·퇴사 발생보고 / <u>호봉승급보고</u> <신설>	2) 종사자 보고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 : 입·퇴사 발생보고 / <u>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u> ● 종사자의 입퇴사일자, 직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종사자등록정보변경 보고를 수행함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지자체→종사자) 하는 경우 종사자 수당신청 보고를 활용 ※ 시설을 통해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경우(지자체→시설→종사자) 반드시 3.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보고를 사용하여 시설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table border="1" data-bbox="1055 810 1899 1342"> <thead> <tr> <th>순번</th> <th>항 목</th> <th>수행주체</th> <th>시스템</th> <th>처 리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종사자 입퇴사 보고</td> <td>시설</td> <td>시설정보 시스템</td> <td>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종사자수당 신청 가능</td> </tr> <tr> <td>2</td> <td>전자결재 및 승인</td> <td>시군구</td> <td>행복e음</td> <td>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td> </tr> <tr> <td>3</td> <td>종사자수당 신청</td> <td>시설</td> <td>시설정보 시스템</td> <td>종사자수당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td> </tr> <tr> <td>4</td> <td>전자결재 및 승인</td> <td>시군구</td> <td>행복e음</td> <td>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td> </tr> <tr> <td>5</td> <td>급여자료 생성</td> <td>시군구</td> <td>행복e음</td> <td>종사자수당 신청 건에 대한 급여자료 확인 및 출력</td> </tr> <tr> <td>6</td> <td>지출품의 및 지급</td> <td>시군구</td> <td>e호조</td> <td>행복e음에서 출력한 급여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품의</td> </tr> </tbody> </table>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 리 내 용	1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종사자수당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종사자수당 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종사자수당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4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5	급여자료 생성	시군구	행복e음	종사자수당 신청 건에 대한 급여자료 확인 및 출력	6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출력한 급여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종사자등록정보변경 보고 내용 및 종사자 수당신청 보고 절차 명시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 리 내 용																																		
1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종사자수당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종사자수당 신청	시설	시설정보 시스템	종사자수당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4	전자결재 및 승인	시군구	행복e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5	급여자료 생성	시군구	행복e음	종사자수당 신청 건에 대한 급여자료 확인 및 출력																																		
6	지출품의 및 지급	시군구	e호조	행복e음에서 출력한 급여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92	만.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신설>	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 개인정보통합관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시스템 접근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사전예방 ※ 의심사례 모니터링, 소명요청 및 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 등록	개인정보통합관제 내용 추가
96	- 따라서 지자체는 -----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따른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종사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내용 명확화
98	2) 지자체 안전점검 ●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 <신설>	2) 지자체 안전점검 ●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 - 지자체는 점검 전 시스템 권한 요청 및 승계 처리를 완료하고, 소관 시설을 적극 독려하여 점검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18년부터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결과입력 전면 시행 예정	점검 결과 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추가
99	<신설>	*'17년 국정감사 시 점검결과 미흡시설 후속조치 미 이행 관련 지적 받았음	17년 국정감사 지적 내용 추가
100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 -----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 ----- 선임하여야 한다. *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내용 명확화
100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 필요한 업무를 수행 *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 필요한 업무를 수행 <삭제>	불필요한 내용 삭제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105	●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기록·보존(*위반 시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기록·보존(*위반 시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반영
105	● 다음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① <u>사망자 1명 이상</u> ② <u>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u> ※ <u>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신청을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한 경우한 경우에는 제외</u>	● 다음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① <u>사망자</u> ② <u>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u>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105	●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지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 위반 시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지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 위반 시 <u>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u>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반영
106	다. 안전표지의 부착 등(법 제12조) ▶ 관련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 등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규칙 별표 1의2 및 2)	다. 안전표지의 부착 등(법 제12조) ▶ 관련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재료 등 (시행규칙 제6조~제9조, 규칙 별표 1의2 및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107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 교육하여야 함(*위반 시 <u>5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 교육하여야 함 (*위반 시 <u>3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반영
123	마. 특정목적사업 예산 2) 방법 : 회계연도마다 ----- 적립 가능 - <u>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적립 불허</u>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2) 방법 : 회계연도마다 ----- 적립 가능 <삭제>	재무회계규칙 개정 사항 반영
130	1) 후원금의 범위 등 ● 주의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신설>	1) 후원금의 범위 등 ● 주의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 명시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133	<p>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신설></p>	<p>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중 과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p> <p>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음 *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로 사용할 것</p> <p>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 반영이 가능하도록 함(‘18년 하반기)</p>	<p>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후원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p>
229	<p>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신설></p>	<p>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p>	<p>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반영하여 내용 명확화</p>
233	<p><신설></p>	<p>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저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p>	<p>유사경력 추가</p>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233	<신설>	<p>참고 “중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18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적용 시점에 대한 설명 추가
233	<p>②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인정범위 및 계산은 (3)「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참조</p>	<p>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p> <p>1) 산정원칙 및 대상경력</p> <p>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이 넘을 경우에는 3년**까지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 등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도 가능 ** 종전의 지침에 따라 해군(상륙병과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로서 3년 1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이미 인정받아 호봉이 계산된 사람은 그 경력을 그대로 인정 <p>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p> <p>* 제대군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轉役)한 사람 2.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3.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을 마치고 면역(免役)된 병 4. 「군인사법」 제41조에 따라 퇴역(退役)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5. 「병역법」 제23조에 따라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6.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지무요원 	국민권익위 개선 요청에 따라 군 경력 인정 대상 확대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233	<p>②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인정범위 및 계산은 (3)「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참조</p>	<p>나)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한 사람</p> <p>* 전환복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제3조에 따른 의무경찰 3. 종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투경찰 4. 종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 <p>다) 종전 「병역법」(2013.6.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②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p> <p>라) 종전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다 소집해제된 방위병</p> <p>마) 종전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제107조에 따라 예편된 학도의용군</p> <p>* 학도의용군 경력 적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은 병적증명서상 기간과 무관하게 8개월 인정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므로 해당 병적증명서와 무관하게 8개월을 인정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p>2) 산정예외</p> <p>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p>	<p>국민권익위 개선 요청에 따라 군 경력 인정 대상 확대</p>

페이지	현행(2017년)	개정(2018년)	비고
235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삭제>	② 군 의무복무경력 내용 수정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 삭제
243	부록 4.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삭제>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인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제외하여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의 부서 혼동 등에 따른 불편 해소

※ 페이지는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